

##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일부개정안

비행장시설 설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항공법 제75조제3항 및 제11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제3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2조”를 “「공항시설법」 제2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”로 한다.

제2조제36호 중 “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3”을 “「공항시설법 시행규칙」 별표1 제8호”로 한다.

제77조제3항 중 “「항공법 시행규칙」”을 “「공항시설법 시행규칙」”으로, “제222조제2호별표2”를 “제3조제2호별표1제2호”로 한다.

제78조제2항 중 “제222조제2호”를 “제3조제2호별표1제2호”로 한다.

제81조제1항 중 “제222조제2호별표2”를 “제3조제2호별표1제2호”로 한다.

제85조제2항 중 “제222조제9호별표4”를 “제3조제4호별표1제9호”로 한다.

제86조 중 “제222조제9호별표4”를 “제3조제4호별표1제9호”로 한다.

제90조제2항 중 “제222조제2호별표2”를 “제3조제2호별표1제2호”로 한다.

제91조제2항 중 “제222조제2호별표2”를 “제3조제2호별표1제2호”하고,

제6항 중 “제222조제13호”를 “제3조제2호별표1제13호”로 한다.

제94조제1항 중 “제222조제2호별표2”를 “제3조제2호별표1제2호”로 한다.

제100조제1항 중 “제243조제1항제6호”를 “제19조제1항별표4제6호”로 한다.

제107조제3항 중 “제222조제2호별표2”를 “제3조제2호별표1제2호”로 한다.

부 칙 <2017. 4. 13.>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